

의안번호	2211598
의 퇴 인	유상범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0.
추 계 번호	25E390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고배당성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					
1	안 제91조의25 (고배당성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)	- 고배당성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- 고배당성향법인: 주권상장법인 중 요건 ① or ② 충족 ① 배당성향 30% 이상 ② 직전 3년 평균 대비 10% 이상 배당 증가 - 내용: 해당 배당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 <table border="1"> <tr> <td>2천만원 이하</td><td>2천만원 ~ 5천만원 이하</td><td>5천만원 초과</td></tr> <tr> <td>9%</td><td>14%</td><td>20%</td></tr> </table> * 단, 10% 이상 주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함 - 적용기한: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	2천만원 이하	2천만원 ~ 5천만원 이하	5천만원 초과	9%	14%	20%
2천만원 이하	2천만원 ~ 5천만원 이하	5천만원 초과						
9%	14%	20%						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1조의25 (고배당성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고배당성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, 대상금액에 대해 현행 대비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득세수 감소가 예상됨
 - (고배당성향법인) 주권상장법인 중 ①배당성향 30% 이상 또는 ②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10% 이상 증가한 법인

- (특례세율) 2천만원 이하: 9%, 2천~5천만원: 14%, 5천만원 초과: 20%
 - 단, 10%이상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함
-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고배당성향법인 요건을 충족할 기업이 지급할 배당금 규모 등에 대한 자료 이외에도, 개별기업 별로 10%이상 주식을 보유하여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대한 현황 자료가 필요함
- 그러나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'발행주식 총수의 10% 이상을 소유한 주주'의 현황 및 이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규모에 대한 자료가 부재함
 - 또한, 특례 대상이 되는 주주(10% 미만 소유)만을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 구간별 배당소득 분포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세수효과 추계가 곤란함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